



제422회 국회(임시회)
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전자간행물 정의규정 개정〉

■ 박지혜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7218호)

2025. 2.

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김건오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전자간행물 정의규정 개정	2
※ 참고자료	
1. 외부단체(공공기관) 의견	6
2. 제21대 국회 유사 법률 발의 및 심사 현황	6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박지혜의원 등 11인

나. 발 의 일 : 2025. 1. 3.

다. 회부연월일 : 2025. 1. 6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잡지, 정보간행물, 전자간행물, 기타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을 정기간행물로 정의하고 있으며, 그 중 전자간행물은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을 뜻함.

이에 따라 통신망을 이용하는 webzine이나 appzine의 경우 전자간행물에 포함되지 못해 기타간행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,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타간행물에도 해당되지 않아 잡지 외 간행물을 신고함에 있어 분류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webzine이나 appzine 등 새로운 형식의 간행물이 전자간행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간행물의 정의에서 “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” 문구를 삭제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다목).

Ⅲ. 검토의견

1. 전자간행물 정의규정 개정

가. 개정안 요지

- 전자간행물의 정의 규정 중 ‘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’를 삭제
(안 제2조).

나.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정기간행물”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·나. (생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다. 전자간행물 : <u>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</u>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	다. ----- <u>컴퓨터</u> ----- ----- ----- -----
라. (생략)	라. (현행과 같음)
2. ~ 5. (생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
다. 검토사항

- 현행법은 정기간행물을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잡지, 정보간행물, 전자간행물, 기타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, 그 중 ‘전자간행물’을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로 규정하고 있음.

[정기간행물 정의규정]

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정기간행물”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잡지 :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시사·산업·과학·종교·교육·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·논평·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

나. 정보간행물 : 보도·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·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

다. 전자간행물 :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

라. 기타간행물 :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2인

- 이에 따라 통신망을 이용하는 웹진(webzine)¹⁾이나 앱진(appzine)²⁾은 전자간행물이 아닌 ‘기타간행물’에 포함되며,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타간행물에도 해당되지 않아 잡지의 간행물 신고에 있어 분류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.

1) 출판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상으로만 만들어 보급하는 잡지(출처: 표준국어대사전)

2) application과 magazine의 합성어

-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웹진, 앱진 등 새로운 형식의 간행물을 신고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기타간행물로 신고·수리되는 상황³⁾이나, 기타간행물은 월 1회 이하 발행하는 간행물로 정의하고 있어 월 2회 이상 발행되는 웹진·앱진은 실질적으로 기타간행물에도 해당되지 않음⁴⁾.

○ 개정안은 전자간행물의 정의에서 ‘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’ 문구를 삭제하여 웹진, 앱진 등을 전자간행물에 포함시킴으로써 정기간행물의 분류상 공백을 해소하고, 발전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.

- 현행 전자간행물 정의규정의 제정시기는 2005년 7월로,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된 최근의 뉴미디어 환경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⁵⁾이 있으며,
- 타 입법례로서 「출판법」 상 ‘전자출판물’은 아래와 같이 통신망상의 유통·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전자적 매체에 실어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.

3)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신고) ① 정보간행물·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(이하 “잡지외간행물”이라 한다)을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

4)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2. “정기간행물사업자”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.

5) 현행 전자간행물의 정의 규정은 컴퓨터·스마트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저장·열람할 수 있는 PDF나 EPUB 등의 전자적 콘텐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, 최근에는 전자책 등을 다룬받지 않고 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임.

「출판문화산업진흥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간행물”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, 발행인, 발행일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.

4. “전자출판물”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.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를 경우 ‘webzine’이나 ‘appzine’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가 전자간행물로 이 법 제16조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되며, 이 법에 따른 의무 규정과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등이 적용되는 만큼 아래와 같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.
-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최근의 전자간행물의 유통 행태를 고려할 때 법 개정이 필요하나, “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”를 삭제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온라인 콘텐츠가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조건부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- 전자간행물은 적어도 독자적인 홈페이지(고유한 인터넷 주소)를 구축하고 있어야 하고, 유튜브 채널이나 포털 블로그 등 플랫폼 상에서만 발행되는 경우는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.

문 의 처

02)6788-5380

참고 1

외부단체(공공기관) 의견

협회명 (의견제출일자)	의견 주요내용
한국언론진흥 재단 (‘24.1.13.) [단서추가]	• 해당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수정이 요구됨 - 전자간행물에 대한 기존 법조항은 “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”로 정의하고 있으며, 이는 PDF 나 EPUB 등 전자책 형태의 간행물을 의미함. 그러나 전자책을 다운로드받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간행물을 이용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법 조항에 대한 개정이 요구됨. - 다만, “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”를 삭제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온라인 콘텐츠가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조건부 조항이 필요함. 전자간행물은 적어도 독자적인 홈페이지(고유한 인터넷 주소)를 구축하고 있어야 하고, 유튜브 채널이나 포털 블로그 등 플랫폼상에서만 발행되는 경우는 제외시킬 필요가 있음.

참고 2

제21대 국회 유사 법률 발의 및 심사 현황

법률명 (의안번호)	대표발의 (발의일)	주요내용	심사경과	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
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(2123772)	홍익표 (‘23.8.10.)	전자간행물을 ‘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’를 삭제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로 규정함	(상임위) •상정(‘23.09.20.) •임기만료폐기	해당사항 없음